

창학 114주년 PTU3.0+ 실현을 위한
「평택대학교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 설명자료

(‘26.09.08., 기획경영본부 기획예산실)

1 제정 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생성형AI(ChatGPT, Claude 등)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연구,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적용됨에 따라 대학 차원의 윤리적·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 마련이 요구됨
- 학습 지원, 연구 보조, 행정 업무 자동화 등 순기능이 매우 높은 반면, 무단 제출, 평가 부정행위, 허위정보 생성(환각 현상),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및 대학 기밀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윤리적·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저작권·연구윤리 등 기존 법체계*와 AI 활용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대학(공공기관)에도 요구되며, 최근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로 AI가 제시되고 있어, 관련 사업 수주에도 자체 규범 마련이 요구됨
- 이에 AI 활용의 기본 원칙, 교육·연구·행정 분야의 AI 활용 기준 및 처리 절차를 정하여 대학 구성원이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반영

-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통해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3대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함
-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AI 사용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본교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 제정안은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AI 활용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
- 또한 대학은 향후 기술 발전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함

● 제정 규정의 기본방향

- 본 규정은 AI 활용을 위촉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규정으로 AI 활용 가능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성원의 AI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
 - 교수자, 학생, 연구자, 직원이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 제공
 - 학사·연구·행정상 분쟁을 예방하고 대학의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 향후 재정지원사업, 교육, 행정의 AI 기반 대학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규범으로 기능

● 핵심 체계(총 8장 44조 및 3개 별표) *붙임 1 규정 전문 참조

<총칙 및 원칙>

-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대학 내 법적·제도적 기본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함
- 제2장 AI 활용 윤리 원칙 (제5조~제11조) : 인간 중심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 5대 윤리 원칙을 선언하고 AI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를 '인간'으로 명확화함

<분야별 원칙 및 활용 기준>

- 제3장 교육·학습 분야 AI 활용 (제12조~제16조) : 교수의 수업·평가 자율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조화시키며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 '책임 있는 활용 역량 강화'를 도모함
- 제4장 연구 분야 AI 활용 (제17조~제21조) : AI 저자 자격 불인정 및 연구데이터 보호를 명시하여 국제 학술 표준 준수 및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함
- 제5장 행정 분야 AI 활용 (제22조~제25조) :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되 성적·인사·입시 등 중요 의사결정에서의 인간의 검토 의무화 및 내부 기밀 유출을 차단함

<관리체계>

- 제6장 AI 활용 관리체계 (제26조~제28조) : 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보안 점검, 세부 지침 개정 등 실행·지원 기반을 마련함
- 제7장 AI 윤리위원회 (제29조~제35조) : AI 관련 주요 정책, 규정 개정, 중대 윤리 분쟁을 심의·자문할 컨트롤 타워를 신설함
- 제8장 AI 부정행위 처리 (제36조~제44조) : 11가지 부정행위 유형과 단계적 조치 기준을 수립하고 소명 기회 보장으로 행정·성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함

<가이드라인>

- 부칙 및 별표 1~3: 표기 기준, 5단계 수업 허용 수준, 11개 부정행위 판단 기준표 제공

● 조항별 문제의식 및 작성(적용) 논리

구분	주요 조항	문제의식	작성(적용) 논리
제1장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계)	“기존 개인정보·연구 윤리 규정이 있는데 별도 규정이 필요한가?”	생성형 AI의 허위정보(환각), 무단 제출 등 신종 리스크는 기존 규정으로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본 규정은 AI 특화 최상위 공통 기본 규정으로 기능하며, 상세사항은 하위 지침으로 유연하게 운용합니다.
제2장	제7조(책임성) 제9조(개인정보)	“AI 오류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학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제7조에 '최종 책임은 AI 활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대학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구성원의 무비판적 AI 신뢰를 예방하는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제3장	제12조(수업기준) 제15조(탐지도구)	“교수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거나, AI 탐지기로 부정행위를 다 가려낼 수 있는가?”	[별표 2]의 5단계 표준 기준을 제공해 교수별 가이드 작성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AI 탐지도구의 오탐(False Positive) 위험이 높아 단독 판정을 금지하고 소명 기회를 의무화하여 억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합니다.
제4장	제18조(저자표기) 제19조(연구부정)	“연구 효율을 위한 AI 사용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닌가?”	연구 보조 도구 활용은 적극 권장하되, 국제 주요 학술지(Nature, Science 등) 기준에 맞춰 AI의 저자 자격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적 위조·변조 리스크를 예방하여 대학 연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제5장	제23조(의사결정) 제24조(기밀보호)	“무료 AI 도구를 행정업무에 자유롭게 쓰게 하면 안 되는가?”	ChatGPT 등 외부 생성형 AI에 성적·인사·입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외부 서버 학습 데이터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기밀 유출이 발생합니다. 보안이 확보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대학 정보 자산을 보호합니다.
제7장	제29조(설치) 제38조(사안분류)	“기존 연구윤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 남설 아닌가?”	AI윤리위원회는 직접 징계를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입니다. 실제 부정행위 조치 및 징계는 기존 교무·연구윤리·인사 절차와 연계 처리되므로 조직 중복이나 권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장	제36조(유형) 제41조(조치)	“부정행위 적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처벌이 어렵지 않은가?”	[별표 3]에 11가지 부정행위 유형과 조치 예시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징계 목적이 아닌 재제출, 교육 이수 등 단계적 계도 조치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 AI 기술 발전과 학내 적용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AI 활용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
- 교육·연구·행정 각 분야의 실제 활용 사례를 축적하여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임

● 단계별 추진 방향

단계	추진내용	비고
1단계	AI 활용 및 윤리 규정 제정	교육·연구·행정 공통 기본 규범 마련
2단계	별표 및 안내자료 배포	AI 활용 표기 기준, 수업 허용 수준, 부정행위 판단 기준 안내
3단계	구성원 교육 실시	학생, 교수자, 직원, 연구자 대상 맞춤형 교육
4단계	행정업무 AI 활용 가이드 마련	개인정보·기밀정보 보호 중심
5단계	운영 사례 점검 및 규정 보완	AI 윤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 검토
6단계	고도화된 AI 도입 대응	AI 서비스 도입, 고영향 의사결정, 자동화 업무 기준 추가 검토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

- 본 규정 제정을 통해 학생, 교원, 연구자,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AI 활용을 대학의 공식 기준 안에서 안정적인 운영 도모

- 교육·연구·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분쟁 예방

- AI 생성물 표기, 수업·평가별 허용 수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및 인간의 최종 검토 원칙을 통해 대학 운영의 신뢰성 확보

- AI 기반 대학혁신 및 미래 변화 대응력 확보

- 본 규정은 AI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혁신, 연구지원,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정이며,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별표,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붙임 : 1. 제정 규정 전문 1부.

2. (별첨)대학 AI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평택대학교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 제정(안) 전문
평택대학교 인공지능(AI) 활용 및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의 교육·학습, 연구, 행정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문적 진실성, 행정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AI 활용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AI)”이란 데이터 학습, 추론, 예측, 분류, 생성, 의사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데이터 분석 결과 등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3. “AI 활용자”란 본 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연구자, 수탁업무 수행자 등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행정 또는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4. “AI 생성물”이란 AI 활용을 통해 생성·수정·요약·번역·분석·가공된 결과물을 말한다. 5. “AI 활용 사실”이란 AI 도구의 명칭, 활용 목적, 활용 범위, 활용 과정 및 활용 결과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건강, 장애, 범죄경력,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정보를 말한다. 8. “기밀정보”란 대학의 인사, 예산, 법무, 입시, 성적, 연구, 계약, 감사, 보안, 의사결정 과정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중요 의사결정”이란 학생의 성적·입학·졸업·장학·징계, 교직원의 임용·평가·징계, 연구윤리 판단, 예산·계약·법무 판단 등 개인 또는 대학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10. “AI 부정행위”란 AI를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연구·행정의 공정성, 윤리성, 정확성, 신뢰성 또는 보안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학습, 연구, 행정, 산학협력, 입학, 학생지원, 정보화, 홍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 학생, 연구자 및 대학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공동사업, 위탁사업 등에서 별도의 AI 활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AI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학칙, 연구윤리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정보보안 관련 규정, 교직원 인사 관련 규정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AI 활용의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하며, 교육·연구·행정 분야별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AI 활용 윤리 원칙 제5조(인간 중심성) AI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학습권, 연구의 자율성 및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제6조(공정성 및 차별 방지) ① AI 활용자는 AI 활용 과정에서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연령, 종교, 출신지	

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편향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AI 활용자는 AI 생성물에 편향, 차별, 혐오, 배제,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성) ①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AI 활용자에게 있다.

② AI 활용자는 AI 생성물을 그대로 신뢰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관계, 출처, 법령·규정 적합성, 윤리성 및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AI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제8조(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① AI 활용자는 교육·연구·행정상 필요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AI를 활용하여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우, 그 활용 목적, 판단 근거, 한계 및 인간의 최종 검토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AI 활용 사실의 표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① AI 활용자는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본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AI 활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성적자료, 입시자료, 인사자료, 계약자료, 법무자료 등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연구·행정 목적상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의 AI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절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성 및 보안성) ① 대학은 AI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허위정보,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저작권 침해, 차별적 결과, 학문적 진실성 훼손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AI 활용자는 AI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 및 권리 보호) ① AI 활용자는 AI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업비밀, 연구성과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AI 생성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라이선스, 출처, 활용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학습 분야 AI 활용

제12조(수업에서의 AI 활용 기준) ① 교수자는 교과목의 특성, 학습목표,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여 수업 및 과제에서 AI 활용 허용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교수자는 필요한 경우 강의계획서, 수업 안내문, 과제 지시문, 시험 안내문 등을 통해 AI 활용 가능 범위, 금지행위, 표기방법, 위반 시 조치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수업별 AI 활용 허용 수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교수자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은 이 규정의 윤리 원칙과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의 AI 활용 책임) ① 학생은 학습 보조, 아이디어 탐색, 자료 정리, 문장 교정, 번역, 코딩 보조, 데이터 분석 보조 등의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은 AI를 활용한 경우 교수자가 정한 기준 또는 [별표 1]에 따라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AI 생성물을 자신의 독창적 결과물로 허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AI 생성물의 정확성, 출처, 인용, 표절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에서의 AI 활용) ① 시험, 과제, 발표, 실습, 프로젝트, 수행평가 등 평가에서 AI 활용 가능 여부는 교수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AI 활용이 금지된 평가에서 AI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AI 활용이 허용된 평가에서도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AI 활용 사실을 은폐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④ 교수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확인, 구두 확인, 초안 제출, 참고자료 제출, 발표·질의응답 등 적절한 평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AI 탐지 도구의 활용 제한) ①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AI 부정행위 여부는 과제 지시문, 제출물의 내용과 수준, 작성 과정 자료, 면담 또는 소명, 유사도 검사 결과, AI 활용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습권 보호) 대학과 교수자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과목의 목적과 평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이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 분야 AI 활용

제17조(연구에서의 AI 활용 원칙) ① AI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자의 학문적 판단과 연구윤리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연구자는 AI를 활용한 경우 연구 분야의 관행, 학술지 기준, 연구윤리 기준 및 연구지원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AI 활용 사실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AI 생성물에 포함된 사실, 통계, 인용, 참고문헌, 분석 결과 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자표기) ① AI 또는 AI 시스템은 연구논문, 보고서, 학술발표, 연구성과물의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② AI를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경우에도 연구성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자는 A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문헌, 실험결과, 통계자료, 인터뷰 내용 등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2. AI 생성물을 검증 없이 연구결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를 AI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로 제출하는 행위
4. 연구 데이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또는 기밀정보를 승인 없이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
5.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

제20조(연구데이터 보호) ① 연구자는 AI 활용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생명윤리 관련 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공동연구자의 자료, 기업·기관의 기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데이터를 AI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연구윤리 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연구계약 및 보안 약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 관련 절차와의 관계) AI 활용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이 규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되, 본 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행정 분야 AI 활용

제22조(행정업무에서의 AI 활용 원칙) ① 교직원은 문서 초안 작성, 자료 요약, 번역, 법령·규정 검토 보조, 민원 응대 보조, 데이터 분석, 회의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AI 생성물을 행정문서, 보고서, 공문, 회의자료, 대외자료 등에 활용하는 경우 사실관계, 법령·규정 적합성, 표현의 적정성, 보안성 및 대학의 공식 입장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AI가 작성한 내용은 대학의 최종 의견 또는 공식 판단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3조(중요 의사결정에서의 인간 검토) ① 입학, 성적, 장학, 졸업, 징계, 인사, 평가, 보수, 계약, 예산, 감사, 법무, 연구윤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인간의 최종 검토와 판단을 거쳐야 한다.

② AI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AI 결과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구성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중요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목적, 주요 자료, 검토 과정 및 최종 판단자를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자료 및 기밀정보 보호) ① 교직원은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의 성적, 출결, 상담, 장학, 입학, 비자, 건강, 징계 관련 자료
2. 교직원의 인사, 평가, 급여, 징계, 노무, 고충, 건강 관련 자료
3. 대학의 예산, 회계, 계약, 소송, 법률자문, 감사, 발전계획,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자료
4. 미공개 회의자료, 내부 검토자료, 보안자료
5.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

② 제1항의 자료를 AI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AI 기반 자동화 업무 관리) ① 대학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보안성 및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 또는 부정확한 결과로 인해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정정, 재검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장 AI 활용 관리체계

제26조(AI 활용 관리체계의 구축) ① 대학은 AI 활용의 윤리성, 안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AI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정
2. 교육·연구·행정 분야별 AI 활용 기준 마련
3. AI 윤리 교육 및 홍보
4. AI 활용 관련 상담 및 자문
5. AI 관련 위험사례 조사 및 개선
6. AI 도구 활용 시 개인정보·정보보안 점검
7. 기타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AI 활용 교육) ① 대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연구윤리, 학습윤리, 정보보안,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입생, 신입교원, 신입직원, 연구자, 평가 담당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별도의 AI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AI 활용 지침)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학습, 연구, 행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AI 윤리위원회

제29조(설치) 대학은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준 및 중대 사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AI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학 AI 활용 및 윤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AI 활용 관련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3. 교육·연구·행정 분야 AI 활용 기준
4. AI 활용 관련 중대한 윤리 문제 및 분쟁
5. AI 활용 부정행위 중 대학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6. AI 활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윤리 사항
7.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운영의 윤리적 적정성
8.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대학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따라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 학생지원, 연구·산학협력, 행정·사무, 정보화, 교수학습,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AI, 교육, 연구윤리, 법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인권, 학생지도 등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AI 활용 및 윤리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3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기밀정보, 연구자료, 조사자료, 심의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AI 부정행위 처리

제36조(AI 부정행위의 유형) AI 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신고 및 접수) ① AI 부정행위를 인지한 구성원은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온라인 신고시스템 등 대학이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교무, 학생지원, 연구윤리, 인사, 감사,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제38조(사안의 분류 및 처리 원칙) ① AI 부정행위 의혹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한다.

1. 수업, 과제, 시험, 성적 관련 사안: 학칙, 성적평가 관련 규정 및 교무 관련 절차
2.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데이터 관련 사안: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연구윤리 심의 절차
3. 학생 징계 관련 사안: 학칙 및 학생상벌 관련 절차
4. 교직원 복무, 인사, 징계 관련 사안: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
5. 개인정보, 정보보안 관련 사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6. 행정상 위법·부당 처리 관련 사안: 감사 또는 관련 내부통제 절차

② 위원회는 개별 징계기관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여부 판단 기준, 윤리적 쟁점 및 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39조(조사 및 소명) ①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에게 사안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알려주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AI 탐지 도구, 유사도 검사, 로그 기록, 문서 작성 이력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일 자

료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심의 및 판단 기준) AI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AI 활용 금지 또는 제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었는지 여부
2. AI 활용의 범위와 정도
3. AI 활용 사실의 표시 여부
4.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여부
5. 평가, 연구, 행정처리 결과에 미친 영향
6. 개인정보, 기밀정보, 저작권 등 권리 침해 여부
7. 당사자의 소명 내용
8. 기타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조치) ① AI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의, 경고 또는 시정 요구
2. AI 윤리 또는 학습윤리 교육 이수
3. 과제 재제출, 감점, 무효 처리
4. 시험 또는 평가 무효 처리
5. 연구결과의 수정, 철회 또는 재검토 요구
6.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 삭제·회수 및 재발방지 조치
7.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 따른 징계 요청
8.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후속 조치

② 제1항의 조치는 관련 학칙 및 규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부서가 결정한다.

③ 조치는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복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재심 또는 이의신청) ① 조치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사안을 처리한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③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가 재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대학은 AI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피신고자, 조사 대상자, 참고인 및 조사 내용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4조(예방 및 개선) 대학은 AI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사례 안내, 수업별 안내문 제공, 평가 설계 개선, 정보보안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AI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학칙, 규정, 지침 및 안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의 윤리 원칙은 필요한 범위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3조(세부지침) 총장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AI 활용 사실 표기 기준

1. 기본 원칙

- ① AI를 활용하여 생성·수정·요약·번역·분석·가공 등을 한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AI 생성물은 활용자가 검토·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AI는 저자, 공동저자, 과제 수행자, 연구책임자 또는 행정문서의 작성 책임자로 인정되거나 표시될 수 없다.
- ④ 교수자, 연구책임자, 부서장 또는 대학이 별도의 표기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표기 필요 여부

구분	AI활용 내용	표기 필요 여부
1	아이디어 탐색, 주제 구상, 개요 작성 보조	필요 시 표기
2	문장 생성, 문단 작성, 요약, 번역, 표현 수정	표기 필요
3	이미지, 영상, 음성, 발표자료, 홍보물 생성	표기 필요
4	코드 생성, 디버깅, 알고리즘 작성 보조	표기 필요
5	데이터 정리, 통계 분석, 시각화 보조	필요 시 표기
6	단순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교정	표기 제외 가능
7	연구논문, 보고서, 대외 제출자료 작성 보조	표기 필요
8	개인정보, 기밀정보, 미공개 자료 입력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기밀정보 또는 미공개 자료의 AI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3. 표기 방법 예시

- ① 과제·보고서: “본 과제는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하였으며, AI 생성 내용은 작성자가 검토·수정하였습니다.”
- ② 논문·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문헌 정리 및 문장 교정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미지·콘텐츠: “본 이미지/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자가 검토·수정하였습니다.”
- ④ 코드: “본 코드의 일부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작성자가 실행 결과와 오류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 ⑤ 데이터 분석: “본 자료의 데이터 정리 및 시각화 과정에서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 표기 수준

AI활용 수준	설명	권장 표기 방식
수준 1	아이디어 탐색, 단순 참고	필요 시 각주 또는 간단 표기
수준 2	문장 일부, 번역, 요약, 코드 일부 활용	본문, 각주 또는 말미 표기
수준 3	핵심 내용 생성 또는 분석 보조	별도 AI 활용 내역 명시
수준 4	결과물 대부분을 AI가 생성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허용 시 상세 활용 내역 명시

5. 금지사항

- ① AI 생성물을 본인의 독창적 창작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 ②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 ③ AI 생성 결과를 검증 없이 제출·공개·배포하는 행위
- ④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미공개 연구자료를 승인 없이 AI에 입력하는 행위
- ⑤ 존재하지 않는 출처, 문헌, 통계, 사례 등을 AI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별표 2] 수업·평가별 AI 활용 허용 수준

수준	명칭	내용	예시
0	사용 금지	AI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폐쇄형 시험, 암기·기초역량 확인 평가
1	제한적 사용	아이디어 탐색, 맞춤법 교정 등 보조적 활용만 허용	주제 구상, 문법 교정
2	부분 사용	문장 수정, 번역, 요약, 코드 일부 등 제한된 범위 허용	초안 개선, 자료 요약
3	적극 사용	AI 활용을 과제 수행 과정의 일부로 허용하되 활용 내역 제출	AI 비교 분석 과제, 프롬프트 설계 과제
4	AI 활용 필수	AI 활용 능력 자체가 학습목표 또는 평가요소에 포함	AI 활용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실습

※ 교수자는 교과목 및 평가 특성에 따라 위 수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AI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기밀정보, 표절, 허위정보 생성은 금지된다.

[별표 3] AI 부정행위 판단 기준표

구분	부정행위 유형	판단기준	조치 수준 예시
1	AI 생성물 무단 제출	AI 생성물을 출처 또는 활용 사실 표시 없이 본인 창작물로 제출	경고, 재제출, 감점, 과제 무효
2	AI 사용 금지 평가에서 사용	시험·과제·평가에서 AI 사용 금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AI 사용	평가 무효, 성적 무효, 징계 요청
3	허용 범위 초과 사용	제한적 활용만 허용되었으나 핵심 내용을 AI로 생성	감점, 재제출, 과제 무효
4	AI 대리 수행	과제·보고서·논문·코드 등을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본인의 수행을 대체	과제 무효, 교육 이수, 징계 요청
5	표절·위조·변조	AI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료를 변형하거나 허위 자료·출처를 생성	성적 무효, 연구윤리 절차 회부, 징계 요청
6	연구부정행위	AI 생성 연구결과, 허위 인용, 조작된 데이터 등을 연구성으로 사용	연구결과 수정·철회, 연구윤리 절차 회부
7	개인정보·기밀정보 무단 입력	개인정보, 민감정보, 성적, 인사, 입시, 법무, 연구자료 등을 승인 없이 AI에 입력	시정 요구, 교육 이수, 징계 요청
8	허위정보 생성·유포	AI를 활용하여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생성·배포	경고, 삭제·정정 요구, 징계 요청
9	권리침해	AI 생성물로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침해	시정 요구, 손해방지 조치, 징계 요청
10	반복적 위반	동일 또는 유사한 AI 부정행위를 반복	가중 조치, 징계 요청
11	기타 윤리 위반	이 규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신뢰성·보안성을 훼손	사안별 판단

※ 조치 수준은 예시이며, 실제 조치는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